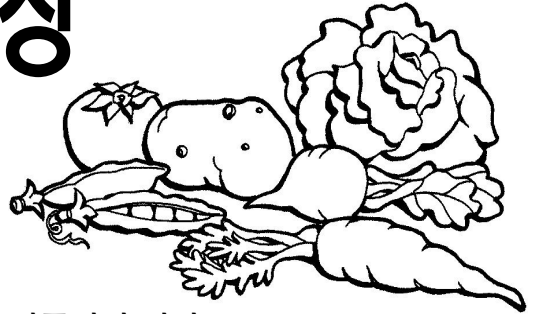


# 우리 농산물 안전성 더 높일 수 있다



라벨 반드시 읽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지켜 사용해야 잔류걱정 없어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반 이상이 거주하고 농산물의 주 소비지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확 전 농산물과 서울가라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어 경매대기 중인 농산물 10,805점을 수거,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농산물이 155건으로 조사건수 대비 1.4%였다고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농산물이 98.6%가 될 정도로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부적합농산물이 갈수록 크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년 농산물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약안전사용지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 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농업인들이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부적합 검출빈

도가 높은 농약의 안전사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다.

지난해 130여개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결과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은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엔도설판, 에토프로포스, 카보후란, 플루페녹수론과 살균제인 펜시쿠론, 카벤다짐, 프로시미돈, 크레속심, 톨크로포스메칠, 메타락실 등 10여 개 농약성분이다. 이중 클로르피리포스, 엔도설판, 프로시미돈은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아 2005년도 농촌진흥청이 사용범위 제한 등 잔류농약경감 조치를 한 농약으로 부적합검출 빈도가 매년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적합 점유비가 20%가 될 정도로 높다.

이중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클로르피리포스는 살충제로써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등에 사용하도록 등록된 과수 전용약제로 가격이 저렴하고 약효가 좋아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약이다. 그러나 작물잔류성이 커 미적용 작물 특히 생장기간이 짧은 채소류 사용이 제한된 농약인데 아직도 겨자채, 근대, 신선초, 쑥갓 등 잎채소에서 부적합 검출이 많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대일 수출 파프리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되어 통관 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수출물량 5%표본검사에서 올해 1월부터는 모든 물량을 검사하는 전수검사로 강화하는 원인을 제공한 농약이기도 하다.

또 엔도설판은 토양살충제로써 담배, 뽕나무 재배지 토양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된 농약이다. 그런데도 미적용 작물인 부추, 상추, 참나물에서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다. 이는 일부 농업인들이 농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안전성 미확보 농산물, 설 곳 없어

물론 소 면적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적어 농약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우선 농업인들이 농약을 구입할 때는 농약 포장재 및 라벨에 표기된 농약사용설명서를 꼭 보고 방제 대상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약사용설명서에 표기된 사용적기, 10a당 농약사용량, 수확 전 최종살포일, 총사용 횟수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약명(상표명)이 다르더라도 농약성분이 같은 경우가 있으니 라벨에 표기된 유효성분을 확인하여 같은 농약을 혼용하거나 반복해서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당 작물 및 병해충에 미등록된 농약은 약효, 약해, 작물잔류성 시험을 하지 않아 사용적기, 적정사용약량, 수확 전 최종살포일, 재배 중 살포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없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적합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약효가 낮거나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농약의 대부분은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유사작물의 최저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약잔류량이 극히 적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기 쉽다.

특히 수출농산물에서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

되면 미국은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인 영의 허용기준(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무조건 부적합판정을 하고 수입을 금지시키며 자동억류(Automation Retention)조치를 한다. 또한 일본은 금년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수입을 금지시키고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다고 한다. 2005년도 우리나라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이상으로 검출된 농약 중 90% 이상이 미적용 농약이다. 즉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이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설명서 대로 즉,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사용하면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은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향상되어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농산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자국의 국민 건강과 농업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으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은 물론 국내 시판도 어렵다는 점을 농업인들은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관련기관 및 농약제조 회사는 농업인들이 농약사용에 어려움이 없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지속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Y



최 홍 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